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2002. 1. 19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을 위한 조치로써 보건복지부령(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)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던바
- 2003. 4.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 제243호) 개정으로 공중이용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할 공중이용시설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짐에 따라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코자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3. 7. 10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